

##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1. 16. 조례 제2902호  
일부개정 2022. 8. 12. 조례 제3433호(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홀·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
2.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무궁화 도시 조성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
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동산·거리 조성
2.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
3. 무궁화 교육사업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
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

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궁화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

1. 무궁화 조성사업 종합계획
2. 무궁화 조성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 8.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칙 <2022. 8. 12. 조례 제3433호,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를 “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  
의위원회”를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